



## 강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대상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 ◆ 추진 개요 ◆

1. 추진사유 : 「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개선대상 조례 지정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3. 추진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단서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조례 제3조에서 동일한 사항을 중복 열거하고 있어 불필요한 관련 조문을 삭제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단서와 중복 열거 사항인 안 제3조의 각 호 부분을 삭제(안 제3조)
5.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15.11월 ~ 12월 중(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5. 12. 23.(수) 예정
  - 구의회 상정 : 제19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2016. 1월)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주무관

**강학구**

대외협력팀장

**정춘현**

행정지원과장

**임재홍**

행정관리국장

전결 11/23  
**고한석**

협조자

주무관

**송수연**

법무팀장

**이기호**

기획예산과장

**조상연**

시행 행정지원과-101999 ( ) 접수 ( )

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 <http://www.gangbuk.go.kr>

전화 02-901-6332 /전송 02-901-6319 / [firefly77@gangbuk.go.kr](mailto:firefly77@gangbuk.go.kr) / 대시민공개